

수암유치원운영위원회 규정

제 정 : 2012. 11. 05

1차개정 : 2023. 07. 21

제 1조 (목적) 이 규정은 「유아교육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및 같은 법 시행령(이하 “시행령”이라 한다), 「유치원규칙」(이하 “규칙”이라 한다)에 따라 수암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

제 2조 (위원의 구성)

- ①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3 제1항,제2항에 의해 유치원 운영 위원회의 정수는 3월 1일 원아 수를 기준으로 100명미만일 경우 5~8명, 100명 이상일 경우 9~11명으로 한다.
- ② 학부모 위원의 비율은 60%~70%, 교원위원의 비율은 30%~40%로 구성한다.

제 3조(선출관리위원회)

-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.
-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 등록, 선거 홍보, 투·개표, 당선자 공고 등의 위원 선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한다.
- ③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1-2인으로 구성하되 학부모회(학부모 대표회의 포함)의 추천을 받아 유치원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호선한다.
- ④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1-2인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교직원 전체 회의에서 추천하여 원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호선한다.
- ⑤ 각 선출관리위원회 구성원이 성원이 안 될 경우는 같이 운영할 수 있으며, 학부모 및 교사는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.

※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은 2명 이상 4명 이하로 규정으로 정함 각 선출관리위원회 구성원이 성원이 안 될 경우는 같이 운영할 수 있음

- ⑥ 선출관리위원회는 공정하고 적법하게 선거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운영 위원으로 입후보하거나 입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.

제4조 (학부모위원 선출)

- ① 학부모위원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선출한다. 단,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선출이 어려울 때에는 선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.
- ② 학부모위원은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전자투표로 직접 선출한다.
- ③ 학부모위원의 선출 방법 및 절차, 당선자 결정, 통지 등은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 세부규칙에 따른다.

제 5조(교원위원 선출)

- ① 교원위원은 본원 재직 교원으로 하며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선출한다. 단,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선출이 어려울 때에는 선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.
- ② 당연직 교원위원인 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자를 원장이 위촉한다. 단,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추천할 수 있다.

제 6조 (보궐선출)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결원된 날로부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보궐 선출한다. 다만, 잔여임기가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 7조 (위원의 임기)

- ①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당선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.
-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

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- ③ 제4조제1항 후단과 제5조제1항 후단의 경우 임기는 제2항에서 정한 범위이고, 다음 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현재 위원의 임기 및 위원장·부위원장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본다.

제 8조 (위원의 자격)

- ① 학부모위원은 본원에 재원하고 있는 자녀를 둔 학부모로 하되,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.
- ② 교원위원은 본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으로 한다.

제 9조 (위원의 의무)

-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적으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-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석하여야 하며,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유치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.
- ③ 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본원과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·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안 된다.
- ④ 학부모위원은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외에는 어떠한 비용도 부담하지 아니한다.

제10조 (위원의 자격상실)

-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자격을 상실한다. 단, 제4호 및 5호는 운영위원회 의결로 결정한다.
 - 1.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한 때
 - 2. 학부모위원은 자녀가 졸업 및 전학·퇴학한때. 다만, 자녀가 졸업한 경우에는 해당 학년도말까지 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.
 - 3. 회의소집 통보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
 - 4. 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서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
 - 5. 제9조제3항을 위반한 때
- ② 위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위원의 사직을 수리할 수 있다. 다만, 폐회 기간

에는 위원장이 수리할 수 있다.

제11조 (위원장 및 부위원장)

- ①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학부모위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.
-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-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한다.
-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.
-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출 할 수 있으며,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
제12조 (기능) 운영위원회는 법 제19조의4 및 시행령 제22조의6, 조례 제10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자문한다.

제13조 (건의사항 처리)

- ① 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다.
- ② 건의사항을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사항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.
- ③ 운영위원회에서 자문하여 채택한 건의사항이 원장의 권한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위원회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건의사항을 원장에게 이송하고 원장은 그 처리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④ 위원장은 건의사항의 처리 결과를 건의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14조 (회의 소집 등)

- ①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매년 4월에 개최한다. 다만,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회의는 원장이 위원의 임기개시일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.

- ② 임시회는 원장 또는 재적위원 1/2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-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한다. 다만,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인정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④ 회의는 연 4회 이상 개최하며, 회의일수는 연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.
- ⑤ 회기는 1일로 하되,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.
- ⑥ 회의는 대면 또는 온라인 비대면으로으로도 할 수 있다.

제15조 (의안의 제출·발의) 운영위원회에서 자문할 의안은 원장 또는 재적위원 2/3 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. 다만, 예산안과 결산은 원장이 이를 제출한다.

제16조 (의사 및 의결정족수)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.

제17조(회의 공개원칙)

-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. 다만,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②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, 유치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, 안건 등을 알려주어야 한다.

제18조 (회의록 작성 등)

- ① 시행령 제22조의4에 따라 유치원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- ② 위원장은 회의 결과와 회의록을 유치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. 다만 시행령 제22조의4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.
- ③ 원장은 유치원 홈페이지에 탑재되는 유치원운영위원회 관련 자료를 로그인 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제19조 (소위원회 구성)

- ① 시행령 제22조의11에 따라 안전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급식소위원회를 두며, 그 밖에 필요한 경우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
- ② 운영위원회 위원은 상시 구성된 각 소위원회의 위원을 겸직할 수 있다.
- ③ 안전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부모 및 외부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- ④ 소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과 간사 1인을 두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.
- ⑤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운영위원회 간사가 겸할 수 있다.
- ⑥ 기타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.

제20조 (서류제출 요구)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전의 자문과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.

제21조 (자문 결과의 통보)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자문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.

제22조 (제척과 회피)

- ① 위원은 안전이 본인 및 본인의 친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전의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.
- ② 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이 관련 안전의 자문·의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위원은 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허가를

받아 그 안건의 자문·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.

제23조 (보고 등)

- ① 원장은 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유치원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,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법 제19조의4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않고 시행할 수 있다.
-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않고 시행한 경우에는 관련 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.

제24조 (간사) 간사는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교직원 중 원장의 추천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할 수 있다.

제25조 (운영경비) 위원의 연수 시 교통비,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유치원회계 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.

제26조 (회의운영규칙)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부칙(2023. 07. 21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최초 위원의 임기 개시일)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위원이 선출된 이후로 개시한 것으로 본다.

제3조(경과조치)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 사항 중 최초의 회의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.